

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

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, 제23조의 규정에 의거
2018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(리모델링)의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
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가. 보조사업명 :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(시비)

나. 보조금 교부대상 : 서초구(가족정책과)

다. 교부결정금액 : 금2,500,000원(금이천오백만원)

라. 교부조건 : 별첨

2018. 9.21.

서울특별시장

보조금 교부조건

- 가.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목적이외 사용을 금한다.
- 나.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- 다.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라.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통장 또는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
- 마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,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,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.
- 바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·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.